

수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가단50022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민경택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수 2020. 1. 6. 접수 제3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16. 1. 4. 60,000,000원 및 2019. 5. 2. 19,999,847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359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20. 6. 12. 'C은 원고에게 82,096,010원 및 해당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는 2020. 8.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1989. 11. 18. C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20. 2. 19.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C은 유일한 소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2020. 1. 2. 증여를 원인으로 2020. 1.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피고는 이 사건 증여는 C과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재산분할계약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3,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20. 1. 2. 당시 30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피고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거나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며 소득생활을 한 점,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37,000,000원에 취득할 당시 설정된 채권최고액 114,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점(증여 이후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음),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와 성년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재산분할 협의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반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

(별지)

목 록

[집합건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동	아파트	
[도로명주소]	1층473.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2층473.10㎡	
	3층473.10㎡	
	4층473.10㎡	
	5층473.10㎡	
	6층473.10㎡	
	지하439.0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소 재 지 번	지 목	면 적
1. 경기도 수원시	대	3110.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 물 번 호	건 물 내 역	
	철근콘크리트조	
	73.45㎡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1 소유권대지권	3110.1분의 43	

